

비밀

외부감사계약서

(일반법인용)

감사의뢰인(갑) 주식회사 아이피에스

감사인(을) : 한영회계법인

위의 갑·을 양자는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감사의 목적) ①이 계약에 의하여 을이 행하는 감사는 외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행하는 감사는 갑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연결재무제표준칙 및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을 포함한다)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을의 감사는 갑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중요하게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재무제표 전반에 대해 중요하지 않은 위배사항까지 적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을의 감사는 갑의 제반법규의 불이행·허위 또는 부정행위 사항을 방지하거나 발견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③재무제표 작성과 적절한 공시·회계자료 유지·회계정책의 선정과 적용·회사자산의 보호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갑의 이와 같은 책임은 본 계약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의하여 경감되지 아니한다.

④감사는 감사보고서 수신인을 위한 것이지 제3자가 의존할 만한 상황이나 특정 거래를 예상하여 계획·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갑은 을의 감사보고서에 특정 제3자에게는 잠재적 이해관계가 되는 항목들이 강조되지 않거나 특정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가 상이하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제2조(감사대상) ①감사대상이 되는 갑의 재무제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별재무제표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재무제표

2. 연결재무제표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의 재무제표

3. 결합재무제표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의 재무제표

②이 계약체결당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감사대상사업연도말 현재 연결대상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외감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감사대상사업연도말 현재 연결대상종속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아니한다.

제3조(을의 업무수행 기준) ①을이 실시할 감사의 기준은 외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 및 동 기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준칙(이하 “감사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따라서 을은 회계감사준칙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감사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회계감사준칙에서 정한 절차와 다르게 감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갑의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준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을은 갑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계획하여 실시한다. 을의 감사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수치와 공시자료의 작성근거를 시사의 방법에 의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며 전반적인 재무제표 표시뿐 아니라 재무제표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중요한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③갑은 갑이 구축한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상의 통제절차가 재무제표의 왜곡사항을 발견하고 수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부적 고유한계와 을이 준수하는 감사기준에 의한 감사가 갑의 전체거래 중 일부의 자료에 대하여 표본시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감사의 한계로 인하여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④을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갑으로부터 제공받는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감사의 대상이 되는 문서의 진실성을 신뢰하고, 갑의 임직원에 의한 위조, 변조 또는 허위 등에 대한 조사절차는 을의 감사범위가 아니다. 이러한 문서로 인하여 갑의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감사보고서에 언급하지 못한 경우 을은 책임이 없다.

제4조(감사 실시기간) 을이 실시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예정기간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감사장소) 갑은 감사의 실시기간중 을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책임자) 을의 감사 책임자는 _____이며,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을은 사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을은 갑에게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제출한다.

1.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50 부를 재무제표기준일후 30 일까지
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부를 연결재무제표기준일후 일까지
3.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부를 결합재무제표기준일후 일까지

제8조(감사보수)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갑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수액(이조에서 “감사보수”라 한다)은 일금 이천삼백만원 원정 (₩ 23,000,00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수액은 계약시 별지 제3호 서식 회계감사보수계산서로 산정·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수액은 감사대상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매출총액·사업장수·감사소요시간·연결 및 결합대상회사수의 증감 등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조정계산하고 잔금지급시에 조정된 과부족금액을 가감한다.

④제1항의 감사보수이외에 을의 감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실비변상적 비용은 갑에게 별도로 청구한다.

1. 실험비
2. 감정료
3. 측량비
4. 출장비
5. 인쇄비
6. 통신 및 조회관련 비용
7.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비용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감사보수액은 공급가액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⑥감사업무 종료후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갑이 감리대상으로 선정되어 을이 갑의 관련업무를 지원할 경우, 정부기관 등 대외기관에서 갑과 관련된 조사업무가 이루어지면서 을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그리고 갑과 관련한 소송 등과 같이 갑에 대한 을의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및 기타 이와 유사하게 을이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을이 실제 투입한 시간에 대한 보수를 별도로 지급한다. 다만, 이에따른 보수금액은 갑과 을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⑦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보수는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감사보수 등의 지급)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수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이 계약과 동시에 착수금으로 30% 해당액을 지급하고, 1차 중도금으로 30% 해당액을 중간감사 종료일 후 2주 이내에 지급하며, 2차 중도금으로 30% 해당액을 실사및조회작업 종료일 후 2주 이내에 지급하며, 잔금은 감사보고서 제출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중도금·잔금 지급시 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제7조에 의한 보고서 제출일을 경과하여 보고서가 제출될 경우 그 경과일에 대하여 갑의 주거래은행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제8조에 의한 감사보수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상기 제1항의 착수금, 중도금, 잔금 지급이 그 기한을 2주이상 경과한 경우 갑은 총 경과일에 대하여 을의 주거래은행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제8조에 의한 감사보수액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감사자료의 제공 등) ① 갑은 감사의 대상이 되는 재무서류를 다음 각호의 지정일까지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재무제표감사 : 정기주주총회 6주일전
2. 연결재무제표감사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월이내
3. 결합재무제표감사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② 갑은 을이 외감법 제6조에 따라 감사실시에 필요한 회사 및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및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에 필요한 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때에는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감사상 필요한 서면 또는 구두질문에 대하여 신속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감사종료시에는 재무제표 등이 사실과 같다는 것을 포함하여 감사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영자확인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제출기한은 관련규정이 변경될 경우 동 규정에 근거하여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조정한다.

제11조(감사인의 비밀준수) 을은 감사상 지득한 비밀을 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보조자의 감사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제12조(해약) ① 갑의 사정에 의하여 해약을 할 때에는 갑은 을에게 이미 지급한 보수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외감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갑의 사정에 의하여 기중감사 착수일이후에 해약할 때에는 감사계약보수액의 2분의 1을, 결산감사 착수일이후에 해약할 때에는 감사계약보수액의 전액을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을의 감사보고서 제출의무는 소멸한다.

③ 을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중에 해약을 할 때에는 을은 이미 영수한 보수액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외감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사유의 발생으로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영수한 보수액을 반환한다.

④ 갑 또는 을의 책임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보수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3항 단서의 경우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은 자동해지된 것으로 하며, 을은 갑이 이미 지급한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보수액을 반환한다.

제13조(배상책임 및 면책) ① 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의 책임은 갑에게 있으므로, 갑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조, 변조,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을에게 제공하거나 감사업무상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을에게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을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갑은 을이 소송 또는 소송 외적으로 부담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을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의 계약사항 위반, 감사업무 수행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을은 본 계약에 의거 수령하는 감사보수금액을 한도로 변상책임을 지며, 을의 감사업무 수행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③ 갑은 을의 감사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비용 등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을의 모든 책임을 면제한다.

④ 갑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등을 지연함으로써 감사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감사보고서의 이용) ① 갑은 유가증권의 신규상장, 기타의 용도로 국내외 관련 법규상의 제출서류(이하 “갑의 재무서류”라 한다)에 감사보고서를 포함하거나 을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할 경우에 을의 사전 서면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 또는 동의요청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재무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대조·검토한 후에 서면승인 및 동의서를 제공한다.

③ 제2항의 업무는 본 계약과는 별개의 업무이며, 그 업무의 범위와 보수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다.

④ 갑은 재무서류(이와 유사한 서류를 포함한다)와 함께 감사보고서를 인쇄매체·인터넷 웹사이트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출판·복제·유통·편집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문건에서 을에 대해 언급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문서의 내용을 을에게 제공하여 을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을의 승인이 없으면 문서의 내용을 확정하거나 배포할 때 을의 감사보고서 또는 을에 대한 언급을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3. 감사보고서가 인쇄매체, 전자매체 기타 어떠한 매체를 통하여 복제될 경우 갑의 재무제표는 주석까지를 포함한다.

⑤ 갑이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를 할 경우 갑은 을에게 전자공시 전에 전자형태의 관련 문서를 모두 제공한다.

제15조(감사보고서가 첨부된 타문서에 대한 책임) 갑이 을의 사전 승인없이 갑의 재무서류에 감사보고서를 포함시키거나 첨부한 경우와 을에 대하여 언급한 경우 을은 동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검토, 입증, 기타 어떠한 절차의 수행책임도 없으며, 갑은 이로인하여 을이 소송 또는 소송외적으로 부담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6조(갑에게 제공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책임) 갑은 을에게 을이 감사시 작성한 소프트웨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소프트웨어 등은 갑의 이용목적에 대한 고려없이 을의 목적만을 위해 특수하게 만들어졌으므로 갑만이 “있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공유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을은 갑이 이용할 어떤 목적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의 충분성 혹은 적절성에 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제17조(인터넷을 통한 정보소통에 대한 책임) 을이 전자메일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갑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바이러스검사 등 적절한 주의를 기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을은 갑에 대한 정보의 전자전송으로 인한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감사조서의 소유권) 감사과정에서 을이 작성한 조서, 기타 전자문서나 전자파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을에게 있다.

제19조(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목적등) ①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는 외감법 제2조의2에 의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와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책임은 갑에게 있다. 갑의 이와 같은 책임은 본 계약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내부통제제도의 검토에 의하여 경감되지 아니한다.

③을이 실시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하는 준칙(또는 요령)에 의한다. 다만, 동 준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외감법에 규정된 질문절차 등에 따른다.

④갑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 대상이 되는 보고서를 감사기간중 을이 요구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상호합의)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이 계약조문의 해석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의 제기는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기타사항)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이 각기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23조(준용규정) 외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업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제2항·제3항·제4항,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특약사항)



2005년 4월 30일

감사의뢰인 (갑)

사무소소재지 京畿道 平澤市 芝制洞 33

상호 (株)아이피에

대표이사 代表理事 張 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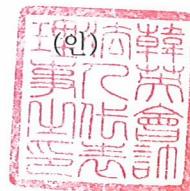


감사인 (을)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5

감사인명 : 한영회계법인

대표이사 : 오찬석



[별지 제1호 서식]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지배회사명 :



(단위 : 백만원, %)

연번	종속회사명	직전사업 연도말의 자산총액	지분율			3) 연결 대상 구분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의 해당호
			1)지배회사	2)종속회사	계		
		해당	없	은			

갑의 대표이사 :

(인)

- ※ 작성요령 : 1)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지분율
2) 지배회사의 종속회사가 다른 종속회사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
3) 연결대상구분 (1.국내종속회사 2.해외종속회사 3.연결제외)

[별지 제2호 서식]

결합대상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현황

기업집단명 : _____

(단위 : 백만원)

연번	계열회사명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1) 결합대상구분	비고
	해	당 없	은	

갑의 대표이사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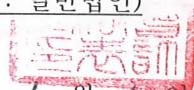
※ 작성요령 : 1) 결합대상구분 (1.국내계열회사 2.해외계열회사 3.결합제외)

[별지 제3호 서식]

회계감사보수계산서

회사명 : ㈜ 아이피아이스

(구분 : 일반법인)



감사대상사업연도 : 제 10 기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외부감사계약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수의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재무제표 회계감사보수

구분	산출방법	보수액
① 기본보수	자산총액: <u>40,212</u> 백만원	
② 사업장수에 따른 가산보수	본사외 사업장수 : ① X ()%	
③ 배정법인 가산보수	(①+②) X ()%	
④ 감사인 변경 시 가산보수	(①+②+③) X ()%	
⑤ 특약에 의한 가산보수		
소계		
<추가조정보수>		
⑥ 외국어 직무수행 또는 외국어 보고서작성 가산보수	(①+②+③+④+⑤) X ()%	
⑦ 감사를 받지 아니한 종속회사가 있는 연결재무제표작성회사에 대한 가산보수	(①+②+③+④+⑤) X ()%	
⑧ 감사를 받지 아니한 계열회사가 있는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에 대한 가산보수	(①+②+③+④+⑤) X ()%	
소계		
합계		

2. 연결재무제표 회계감사보수

구분	산출방법	보수액
① 기본보수	연결자산총액: 백만원 연결자산총액을 개별재무제표 회계 감사기본보수에 적용하여 산출한 금 액의 ()%	
② 종속회사 수에 따른 가산보수	종속회사 수 : ① X ()%	
③ 외국어 직무수행 또는 외국어 보 고서작성 가산보수	(①+②) X ()%	
합계		

3. 결합재무제표 회계감사보수

구분	산출방법	보수액
① 기본보수	결합자산총액: 백만원 결합자산총액을 개별재무제표 회계 감사기본보수에 적용하여 산출한 금 액의 ()%	
② 계열회사 수에 따른 가산보수	계열회사 수 : ① X ()%	
③ 외국어 직무수행 또는 외국어 보 고서작성 가산보수	(①+②) X ()%	
합계		

4. 실비변상 비용

구분	산출방법	보수액
① 실험비		
② 감정료		
③ 측량비		
④ 출장비		
⑤ 인쇄비		
⑥ 통신 및 조회관련비용		
⑦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비용		
합계		설 81

공급가액	$1 + 2 + 3 + 4$
세 액	$(1 + 2 + 3 + 4) \times 10\%$
총 계	공급가액 + 세액

2005년 4 월 30 일

감사의뢰인 (갑)
平澤市 芝制洞 33
사무소소재지 : (갑) 아이피에스
상 호 : 대 표 이 사
대 표 이 사 代表理事 張 鎬
(인)



감 사 인 (을)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5

감 사 인 명 : 한 영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 오 찬 석

